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73호로 2023년 5월 2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 단위를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제12호)
- 나. 주차요금 할인·할증에 따른 100원 미만 절사 방식을 10원 미만 절사로 개정(안 별표 1 공영주차장 요금표 제24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4. 27. ~ 5. 17./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의 혜택 대상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무인화 및 신용카드 사용 일반화에 따라 주차요금 절사 단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안 별표1에서 기존 조례에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두 자녀 가정에게는 100분의 30, 세 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100분의 50으로 차등적으로 할인하던 것을 본 개정안에서는 두 자녀 이상이면 자녀 수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100분의 50로 할인하도록 하여 두 자녀 가정에게 지원을 강화하였고, 주차요금 100원 미만 절사 방식을 10원 미만 절사로 개정하였음.

○ 검토결과

-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¹⁾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서울시는 전국 최하위인 0.59명을 기록하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녀의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두 자녀 가정에게도 더 많은 지원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현금결제가 많았던 과거에는 효율적인 요금정산을 위해 주차요금 할인·할증에 따라 100원 미만 절사 방식을 사용하였으나, 공영주차장 무인화로 인한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10원 미만 절사 방식으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참고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2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

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생략)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 6 (생략)

7.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의2 ~ 14 (생략)

② ~ ③ (생략)